

의안번호	제 372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4월 18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2
------------	-----

제출연월일 : 2016년 4월 1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정하고, 심의 위원을 의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2. 주요내용

-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정(안 제2조)
- 심의회의 기능 개정(안 제3조)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개정(안 제4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에 관한 사항
5. 가축전염병의 관리와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의 · 축산 · 의료 · 환경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 축산업무 담당과장
2. 농업기술원 축산담당과장
3. 충청북도 가축방역기관장
4. 시 · 군 축산업무 담당과장
5.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북지역 관할 가축질병방역센터장
6.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축산 관련 총괄 담당
7. 충청북도 축산단체협의회장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북도본부 방역관계관

9. 생산자 단체(지회·협의회)장

10. 수의·축산·의료·환경 관련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11.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간사는 충청북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사무관이 한다.

⑤ 질병·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 <u>가축방역협의회</u>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u>가축방역심의회</u>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가축전염병 예방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가축전염병 예방법</u> 」----- ----- <u>가축방역심의회</u> ----- ----- -----.
제2조(가축방역협의회) 법 제4조 <u>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 <u>가축전염병 예방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의 발생시 대처할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현 행	개 정 안
<u>사항</u> <u>3. 가축전염병의 관리와 방역에</u> <u>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u> <u>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u> <u>치는 사항</u>	<u>연구</u> <u>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u> <u>수립 및 시행</u>
<u>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u> <u>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u> <u>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u> <u>위원으로 구성한다.</u>	<u>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u> <u>의 협조대책에 관한 사항</u> <u>5. 가축전염병의 관리와 방역에</u> <u>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u> <u>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u> <u>부의하는 사항</u>
<u>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농정국장</u> <u>이 되고, 부위원회는 위원 중에</u> <u>서 호선한다.</u>	<u>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u> <u>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u> <u>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u> <u>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위원은 축산학 또는 수의학에</u> <u>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u>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장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u> <u>임명 또는 위촉한다.</u>	<u>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농정국장</u> <u>이 되고, 부위원회는 위원 중에</u> <u>서 호선한다.</u>
<u>1. 충청북도 축산업무 담당과장</u>	<u>③ 위원은 수의 · 축산 · 의료 · 환</u> <u>경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u> <u>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u> <u>촉한다.</u>

현 행	개 정 안
<u>2. 충청북도 가축위생방역기관장</u>	<u>2. 농업기술원 축산담당과장</u>
<u>3. 시 · 군 축산업무 담당과장</u>	<u>3. 충청북도 가축방역기관장</u>
<u>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 청주출장소장</u>	<u>4. 시 · 군 축산업무 담당과장</u>
<u>5. 충청북도축산단체협의회장</u>	<u>5.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북지역 관할 가축질병방역센터장</u>
<u>6. 수의 · 축산관련 대학 교수</u>	<u>6.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축 산 관련 총괄 담당</u>
<u>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북 도본부 사무국장</u>	<u>7. 충청북도 축산단체협의회장</u>
<u>8.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축 산관련 팀장</u>	<u>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북 도본부 방역관계관</u>
<u>9. 생산자 단체 도지부(지회 · 협 의회)장</u>	<u>9. 생산자 단체(지회 · 협의회)장</u>
<u>10.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추천 하는 자</u>	<u>10. 수의 · 축산 · 의료 · 환경 관 련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u>
<u>④ 간사는 충청북도 가축방역업 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u>	<u>11.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u> <u>④ 간사는 충청북도 가축방역업 무 담당 사무관이 한다.</u> <u>⑤ 질병 · 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 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u> <u>⑥ 제5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 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 를 준용한다.</u>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u></p> <p><u>②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u>제6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u></p> <p><u>1.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u></p> <p><u>2.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u></p> <p><u>3. 협의회 업무와 관련한 민원을 야기 시켰을 때</u></p> <p><u>4.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u></p> <p><u>5. 품위손상 등 위원의 자격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u></p>	<p><u>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u></p> <p><u>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u>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p> <p><u>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p>

현 행	개 정 안
<u>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u>	<u>제7조(위원회 제척 · 기피 · 회피)</u> <u>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u>
<u>②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u>	<u>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 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 · 자문 ·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u> <u>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u> <u>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③ 회의시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전염병 예찰실시 요령」에 따라 실시한 예찰과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u>	<u>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u>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u>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수당 등) 제7조에 따라 회의를 위하여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p> <p>다만,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u>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p>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대행한다.</p> <p>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관련 법령 발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6.22.>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③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축산·의료·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15.12.21.>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

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09.4.30., 2011.7.25., 2013.3.23., 2015.12.21.>

-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5.12.21.>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3.3., 2009.4.30., 2011.7.25., 2013.3.23.>
- ⑤ 심의회의 위원은 수의(獸醫)·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5.12.21.>
- ⑥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는 질병·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5.12.21.>
- ⑧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5.12.21.>

제6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21.>

-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1.>
-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21.>
- ⑤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12.21.>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심의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8.3.3., 2011.7.25., 2013.3.23., 2015.12.21.>

-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1.>
- ③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5.12.21.>